

#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(안)

의 안 번 호	246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9.  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□ 제안이유

-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의 효율화 및
-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 제4조에 의거 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 □ 주요골자

- 특별회계 적용범위를 재산관리, 세입·세출·예산의 편성 및 집행으로 함(안제2조)
- 회계의 관리·운용자를 대학의 학장으로 함(안제3조)
- 세입과 세출기준을 정함(안제5~6조)
- 지방채 및 일시차입을 할수 있도록 정함(안제7조)
-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받을수 있도록 함(안제8조)
- 수업료 등 결정 및 면제규정을 둠(안제11~12조)
-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(안제13~14조)

## □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5조
- 지방자치법 제117조
-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 제4조

##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(이하“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,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대학의 운용에 필요한 재산관리, 세입·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한한다.

제3조(관리·운용) 회계는 대학의 학장이 관리·운용한다.

제4조(세입)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수험료.
2. 입학금 및 수업료.
3. 수수료 및 사용료.
4.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.
5.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.
6. 국가로부터의 보조금.
7. 기타 잡수입.

제5조(세출)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.

1. 대학의 운영·관리비.
2. 대학의 사업비.
3. 장학기금의 출연.
4. 지방채 또는 일시차입금 상환에 필요한 경비.
5. 예비비 등 기타.

- 제6조(지방체 및 일시 차입금) ① 대학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체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② 회계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회계년도에 상환하여야 한다.

제7조(전입금) 대학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등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이 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.

- 제8조(수험료) ① 대학에 입학하고자 입학시험에 응하는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수험료의 납부는 “대학수입증지” 또는 “현금”으로 하며, 납부된 수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③ 수험료는 학장이 결정한다.

- 제9조(입학금 및 수업료) ① 대학에 입학·수학하는 학생은 소정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징수방법·납부시기·절차등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입학금등 결정) 입학금 및 수업료의 책정은 학장의 요구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.

- 제11조(수업료등 면제) ① 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.
1. 국가 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령에 의거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자.
  2. 천재지변 및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해 수업료 등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.
-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(수수료) ① 학장은 학사에 관한 각종증명을 발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수료의 징수는 “대학수입증지” 또는 “현금”으로 한다.

② 증명의 종류와 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.

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.
2.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.

제13조(사용료) ① 학장은 대학의 시설물중 일부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, 이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.

제14조(준용규정) 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,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,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하며,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에 의하여 특별회계가 설치운영되기전 이미 성립되어 집행 되었거나 집행중인 회계의 잔액은 이 회계로 이입한다.

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성립된 예산의 편성과 승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본다.